

서울특별시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41
----------	-----

2023년 3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 상정일자 :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2월 2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 제안이유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위탁 운영 종료(2023.3.1.)에 따라 민간 위탁으로 전환이 필요함.
- 학대와 가정에서의 분리 등으로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돌보는 시설로 전문지식 및 현장 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
-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비공개시설)
- 시설규모: 연면적 114,52m²(대지 17,593.5m²분의 45.32, 공동주택 2층)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꿈자람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및 관리
 - 학대피해로 의뢰된 아동보호 및 치유 기능
 - 학대피해아동 교육·특기적성·문화체험 등 생활 지원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 조사
 -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 위탁기간: 2023. 6. 1. ~ 2028. 5. 31.(5년)
 - ※ 현운영법인: (사)모래놀이상담협회(위탁기간: '18.4.10.~'23.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23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23.1.17.)
- '23년 소요예산(안): 345,498천원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5항(사회복지시설 및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관리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사무 내용)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3항(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서울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설치된 시설로, 현재 운영 법인의 수탁종료 의사표시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맞게 신규위탁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사업성을 두루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학대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5항(사회복지시설 및 위탁운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관리·운영위탁)]

-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이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예산변경 필요

○ 2023년 예산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되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변경이 필요함.

※ 기 편성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45,498천원 중 민간위탁 선정 후 인수·인계시까지 지출예산을 제외한 201,540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3년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적정)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4조의3제1항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심리검사나 검진 등을 통한 치료와 학업지도, 체육활동 등 교육 및 정서 지원임.

2 주요사항 검토

가. 동의안의 추진배경

-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자치구에서 쉼터 추가설치 국비 보조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서울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2018. 3. 2.부터 5년간 위탁운영하였으나 현재 운영법인의 수탁종료 의사표시로 신규 수탁법인 공모를 추진하여야 하는바,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12.30>

- 서울특별시 전체의 학대피해아동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위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음.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문제행동 및 우울증·자살충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후유증에 신속하게 개입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건강한 자아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동의 보호 및 양육뿐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단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학대아동피해쉼터 추가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단 건수>

(단위: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고접수	3,812	3,660	3,571	4,369	6,137
학대사례	2,307	2,227	2,200	2,670	3,421

- 현재 서울지역에는 8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23년도에 추가로 5곳의 쉼터가 설치 예정임.(붙임1)

나.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타당성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

- 「지방자치법」 2)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³⁾ 및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⁴⁾에 따라 시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민간위탁조례」 제4조⁵⁾ 및 제6조⁶⁾ 등에서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2)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2012. 12. 31., 2014. 5. 14.>

1.~2. (생략)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생략)

② 삭제 <2014. 5. 14.>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18., 2009. 7. 30., 2014. 5. 14., 2019. 9. 26.>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8.~9. (생략)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안전 및 신속한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또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7)에서 시장은 필요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

3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위탁 운영 종료(‘23.3.1) 예정에 따라 신규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

-
- 7)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2. 31.>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금번 동의안에서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안전 및 신속한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동의 보호 및 양육뿐만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붙임1	서울 지역 학대피해아동쉼터현황
-----	------------------

□시설현황 : 13개소(시립 5, 구립 8)

연번	기관명	설립주체	소재지	운영단체	종사자	정원(성별)	규모(m ²)	설치일
1	이룸	시립	중랑구	(사)아동그룹홈협의회	6명	7명(여아)	147.97	'18.02.28.
2	다운	시립	관악구	(사)아동그룹홈협의회	6명	7명(남아)	131.43	'17.12.14.
3	꿈마루	시립	강서구	(사)꿈이루는사람들	6명	7명(남아)	136.89	'21.03.02
4	꿈자람	시립	동대문구	(사)모래놀이상담협회	6명	7명(여아)	114.52	'18.04.14. →'23.6.1(민간위탁)
5	OU	구립	노원구	(사)모래놀이상담협회	6명	7명(여아)	113.30	'19.07.10.
6	꿈나래	구립	서초구	계영복지재단	4명	7명(여아)	108.00	'21.10.25
7	꿈누리	구립	양천구	(사)꿈을이루는사람들	6명	7명(여아)	113.91	'22.07.20.
8	다예	구립	노원구	(사)모래놀이상담협회	6명	7명(영유아)	143.66	'21.07.01.
9		시립	서대문구					'23년 설치예정
10		구립	서대문구					'23년 설치예정
11		구립	강서구					'23년 설치예정
12		구립	영등포구					'23년 설치예정
13		구립	강동구					'23년 설치예정

- ※ 꿈자람 쉼터는 지정위탁 운영('23.3.1.) 종료로 '23년 신규 민간위탁 추진
- ※ 다예 쉼터는 성별 구분없이 운영하여 국비 미지원 (설치·운영비 전액 구비부담)
- ※ 서대문구 쉼터(가칭)외 4개소 '23년 설치 예정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41
----------	-----

제출년월일 : 2023년 2월 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위탁 운영 종료(2023.3.1.)에 따라 민간 위탁으로 전환이 필요함
- 나. 학대와 가정에서의 분리 등으로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돌보는 시설로 전문지식 및 현장 경험을 보유한 사회 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시설명: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
-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비공개시설)
- 시설규모: 연면적 114,52㎡(대지 17,593.5㎡분의 45.32, 공동주택 2층)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꿈자람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및 관리
 - 학대피해로 의뢰된 아동보호 및 치유 기능
 - 학대피해아동 교육·특기적성·문화체험 등 생활 지원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 조사
 -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 위탁기간: 2023. 6. 1. ~ 2028. 5. 31.(5년)
 - ※ 현운영법인: (사)모래놀이상담협회(위탁기간: '18.4.10.~'23.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23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23.1.17.)
- '23년 소요예산(안): 345,498천원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5항(사회복지시설 및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관리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사무 내용)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3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서울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설치된 시설로, 현재 운영법인의 수탁종료 의사표시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맞게 신규위탁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사업성을 두루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학대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5항(사회복지시설 및 위탁운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관리·운영위탁)]

-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예산변경 필요

- 2023년 예산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되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변경이 필요함

※ 기 편성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45,498천원 중 민간위탁 선정 후 인수·인계시까지 지출예산을 제외한 201,540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필요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2023년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적정)

※ 작성자: 아동담당관 아동학대대응팀 고경미 (☎2122-5172)